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91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서미화 · 박지원 · 홍기원
백혜련 · 전현희 · 김승원
이인영 · 최혁진 · 허영
송영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제때에 선출 및 지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 다양성에 따른 인권위 본연의 직무를 단절없이 수행하고 선출·지명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임기제의 실질적 운영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임기만료 후 90일 이내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

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심사에서는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의 동일성을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5조의2 신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으로 제한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

인권위 진정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다수의 선행연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매우 소극적임. 비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구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UN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여 국내적인 사회권구제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사회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 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를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

· 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위 각 선출·지명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가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출·지명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의 제목 중 “위원장의”를 “위원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록을 영상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를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직무수행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u>	④ -----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에
<u>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u>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u>선</u>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
<u><단서 신설></u>	-----.
	<u>다만 그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u>
<u><신 설></u>	<u>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u>
	<u>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위 각 선출·지명기관에 인권</u>
	<u>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가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u>

② 각 선출·지명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⑤ (생략)

<신 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

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
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
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사
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
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
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
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록을 영상과 함께 공개
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
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u>제10조부터 제22조까지</u>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생략) ② ~ ④ (생략)	----- ----- ----- ----- -----. 1. ----- ----- ----- ----- ----- ----- ----- ----- ----- ----- ----- <u>제10조</u> ----- <u>부터 제22조까지</u> 및 <u>제31조부터 제36조까지</u>의-----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